
다중운집인파사고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2024. 9.

행정안전부

목 차

I. 다중운집인파사고 개요	1
II. 다중운집인파사고 사례	4
III. 다중운집인파사고 안전관리	7
IV. 기관별 역할	9
V. 다중운집인파사고 사전조치	14
참고 1. 다중운집 인파사고 15개 세부 유형	16
참고 2. 다중운집 인파사고 유형별 안전관리 체계	17
참고 3. 인파밀집 지역 안내문 예시	18
참고 4. 다중운집 인파사고 관련 규정	19

< 가이드라인 제정 목적 등 >

- 지역축제·공연·체육행사 등 다중운집이 예상되는 시설·장소, 업무를 담당하는 주관 부처, 시·도, 시군구와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게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체계를 제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음
- 본 가이드라인은 다중운집인파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를 위한 참고자료이며, 관련 법보다 우선할 수 없음

<다중운집인파사고 안전관리 관련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제42조(강제대피조치)

제43조(통행제한 등)

제44조(응원)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 조치)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경찰의 사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도로교통법 제9조(행렬등의 통행)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공연법 제11조(재해예방조치)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의2(재해예방조치)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의2(대규모 행사에서의 응급의료 인력 등 확보 의무)

I

다중운집인파사고 개요

□ 다중운집인파사고의 정의

- 한정된 공간에 인파가 몰리면서 생명·신체 및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회재난으로 축제·행사, 주기적 밀집, 예측곤란 밀집에 의해 발생
※ (「재난안전법」 제3조제1호 나목) 사회재난 유형에 다중운집인파사고 반영 (24.7.17. 시행)
- 인파밀집: 장소의 수용능력을 넘는 인원이 모인 상황

수용능력

① 실내 공간: 2인/m²

* 문체부의 「공연 관객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동일 기준(0.46m²/인) 적용

② 실외 공간: (여유) 2인/m², (주의) 3인~4인/m², (위험) 5인/m²

- ※ 1인 0.46 m²를 할당하도록 권장(일반적으로 서서 보는 관람 구역 기준, 미국 NFPA 101)
- ※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수용능력을 준용하되, 시설·장소·환경·상황 등 고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

< 10·29이태원참사 수사 결과(특별수사본부, '23.1) >

※ University of Suffolk의 교수 키스 박사(G. Keith Still)의 홈페이지 게시·인용 논문 분석
< J. J. Fruin, The causes and prevention of crowd disasters(Elsevier, 1993) >

- ① 1m²당 7명 정도의 균중 밀집도에서 균중은 유체 덩어리처럼 변화
- ② 균중 내부 전체로 퍼져나간 파동으로 사람들이 약 3m 이상 떠밀릴 수 있음
- ③ 사람들의 신발이 벗겨지거나 옷이 찢기는 상태가 발생 가능
- ④ 균중 속 개개인의 불안증세를 악화시켜 호흡곤란 증세 유발
- ⑤ 압력에 의한 질식(Compressive asphyxia)를 유발할 수 있음
- ※ 발생한 열기와 신체 주변으로 생성되는 단열효과로 인해 기절할 가능성도 있음

- 인파안전관리: 인파가 밀집되었다고 판단되면, 인파의 효율적인 이동을 촉진하여 개인의 안전과 편안함을 보장하는 사전 예방적인 활동

□ 적용범위

- 본 가이드라인은 다중운집인파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관련 법보다 우선할 수 없으며 공연법 등 관련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규정(가이드라인 등* 포함)을 우선 적용

*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 「공연 관객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철도 혼잡도 관리 가이드라인」 등

< 다중운집인파사고 관련 재난관리책임기관 역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 ① **사회재난 유형:**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다중운집 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법 제3조)
- ② **재난예방조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은 소관 관리 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예방조치 시행(법 제25조의4)
 -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에방에 관한 홍보 등
- ③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법 제34조의5)
 -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해 재난관리체계와 관계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작성·운영**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재난 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 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로 지방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작성·운영

□ 다중운집 3대 유형

- ① **(사전예고된 축제·행사)** 주최자가 있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참가인원, 개최시기·장소 등이 사전 등록·예고된 인파밀집
 - ※ 서울세계불꽃축제^{100만}, 부산불꽃축제^{100만}, 유명 연예인 공연, 강원 청소년동계올림픽 등
- ② **(주기적 밀집)** 특정시기의 연례적 집결, 평시 출·퇴근시간의 주기적 밀집과 같이, 주최자가 없지만 반복성이 있어 예측가능한 인파밀집
 - ※ (연례 행사) 성탄절, 핼로윈, 연말연시 해넘이·해맞이(명소) 등, (지하철 등) 잠실역^{28.6만/1일} 등
- ③ **(예측곤란 밀집)** 대도시권 상권 발달 지역(클럽·카페 등), 시설 고장(에스컬레이터 등) 등 돌발상황으로 예측이 곤란한 인파밀집
 - ※ 명동특구^{10만}, 홍대거리^{9만}, 성수카페거리^{3만}, 대구 동성로^{6만}, 광화문역(에스컬레이터 고장) 등

□ 다중운집인파사고 유형

○ 인파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다중운집 3대 유형을 15개로 세분화(참고 1)

< 다중운집인파사고 발생 우려 15개 유형(예시) >

사전예고된 축제·행사 (5개 유형)	①지역축제, ②대학축제, ③공연, ④경기, ⑤행사(종교 박람회 등) 등
주기적 밀집 (7개 유형)	⑥연례적행사, ⑦지하철, ⑧버스터미널(정류장), ⑨공항, ⑩대규모점포, ⑪전통시장, ⑫해수욕장 등
예측곤란 밀집 (3개 유형)	⑬대도시 발달상권 ⑭지하철·공항 운행정지, ⑮지하철 에스컬레이터 고장 등

○ 유형별 다중운집 사례

구분	다중운집 유형	
사전예고된 축제·행사		
		
	지역축제	대학축제
	공연	행사(종교, 박람회 등)
주기적 밀집		
		
	연례 행사	지하철
예측곤란 밀집		
	대규모점포	전통시장
	에스컬레이터 고장	KTX 등 교통수단 운행정지

II

다중운집인파사고 사례

○ (주기적 밀집) 김포골드라인 인파사고 사례

- (발생일시) '23. 4. 11.(화) 07:42 ~ 08:34
- (사고내용) 김포 골드라인 '고촌역→김포공항역' 구간 승강장 및 열차 내 인파밀집으로 인한 과호흡 승객 3명 발생
- (발생원인) 해당구간은 최대 혼잡도* 285%(‘20.10.)를 기록한 후, 배차간격 조정 등의 조치에도 혼잡도가 261% 수준임(‘23.4.)
* 열차 탑승 기준인원(172인) 대비 실제 탑승인원(387인) 비율
- (문제점) 일 평균 승객^{3.3만명}은 예측수요^{4.3만명}에 못 미치나(79%), 출근시간대의 승객^{7.8천명}은 동시간대 예측수요^{4.8천명} 초과(162%)



[해당구간 열차 내부]



[역사 내 인파밀집 상황]

○ (예측곤란 밀집) 광화문역 에스컬레이터 고장에 의한 인파혼잡 사례

- (발생일시) '24. 2. 2.(금) ~ 2. 14.(수) (에스컬레이터 수리기간)
- (혼잡원인) 광화문역 승강장^{지하3층}에서 3번 출구^{지하1층} 이동구간에 설치된 상행 에스컬레이터 고장으로 출·퇴근 시간대 인파혼잡 발생
- (안전인력 배치) 안전관리를 위해 경찰, 안전보안관 등 21명 투입
- (동선분리 조치) 계단 상행 승객만 이용하도록 동선분리 조치
- (교차운행 조치) 상·하행선 열차의 동시진입 제한을 통한 승객 분산



[수리중인 에스컬레이터]



[계단 이용 승객 혼잡상황]

○ **(주기적 밀집) 진주시 버스정류장 안전사고 사례**

- (발생일시) '24. 4. 1.(월) 16:00경
- (사고내용) 진주시 상대동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려는 △△여중 학생들에 밀린 70대 여성 1명이 넘어져 부상
- (발생원인) 하교하는 학생^{700여명}이 일시에 정류장에 집중되어 혼잡 발생
- (문제점) △△여중의 전 학년 하교시간이 동일하여 정류장의 인파 밀집도가 높으나, 안전요원 배치 등의 조치 미비



[사고발생 정류장 전경]



[사고발생 정류장의 위치]

○ **(주기적 밀집) 성수역 3번출구 인파혼잡 사례**

- (위험요소) 퇴근시간 15분(18:05~20)간 지하철 승객이 집중되어, 역사 진입 대기줄로 인한 혼잡 및 교통사고 발생 우려
 - (현황) 출구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건너편 도로까지 대기줄 형성
 - (원인) 지식산업센터 입주, 주변 상권발달로 지하철 이용객 증가*
- * 최근 5년 간 성수역 일평균 이용객수 지속 증가(20년 대비 160% 증가)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1~6월)*
일평균이용객	53,231명	58,498명	67,849명	78,018명	85,210명

- (안전인력 배치) 시니어 안전도우미(5명) 및 경찰 순찰차 배치
- (환경개선) 횡단보도 이전 및 보행자 신호등 설치, 지장물 이전



[역사 진입 인파혼잡 상황]

○ **(사전예고된 축제·행사) 성수동 공연장(△△팩토리) 인파사고 사례**

- (발생일시) '24. 7. 28.(일) 00:26경
- (사고내용) 인파밀집으로 인한 공연장 내 호흡곤란 등 증상자 5명 발생
- (원인) 주최측은 계단을 일방통행하도록 설정·운영하였으나, 메인 공연 시간에 관객이 협소한 1층 비상계단(폭 1.2m)으로 집중*
 - * 3층에서 유명 DJ 공연이 예정되어 있어 관객이 일시에 올라가기 위해 계단으로 집중
- (운영상 문제) 당초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밀집*했고, 안전관리요원(50명)을 배치했으나 안전관리 부족, 사고발생 시 주최측에서 신고도 하지 않음
 - * 주최측 공연장 최대수용 4,000명 → 회당 관람인원 3,900명 / 소방상황보고서 관람인원 4,500명 추산
- (예방활동 미흡) ◎◎구는 공연주최측이 제출한 '재해대처계획'에 대해 신고 수리했으나, 안전점검 등 인파사고 사전 예방활동 미흡
 - ※ 재해대처계획에 대해 지자체는 수리/보완 규정만 있고 사전심의 및 안전점검 규정은 부재
- (법·제도 등 미비) 공연장 외의 공연시설은 실내 인파관리를 위한 적정 수용인원 산정 기준이 부재하며, 지자체의 재해대처계획에 대한 사전심의 및 사전점검 등 관련 규정 미비



[공연당일 실내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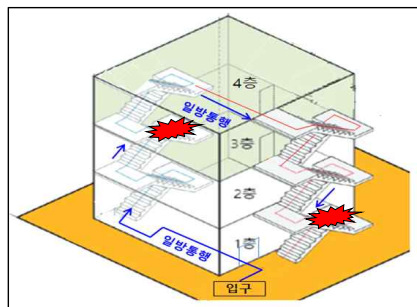
[공연당일 실외 사진]



[공연 중단 및 관객 해산]



[사고발생 비상계단]



[사고발생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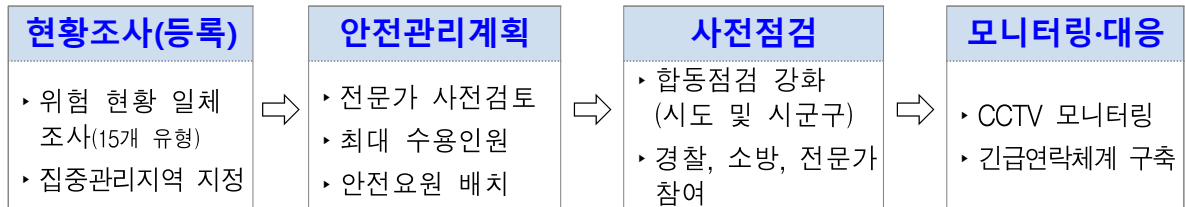
Ⅲ

다중운집인파사고 안전관리

□ 다중운집인파사고 안전관리 기본방침

- 인파사고 안전관리를 위해 4단계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참고2)

* 주관부처, 시·도 및 시·군·구,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이 주도적 안전관리 실시



※ '예측근란 밀집'은 현황조사 및 계획수립이 어려우므로 신속 대응을 위한 사전인지에 주력

□ 다중운집 유형별 안전관리

- ① **(사전 예고된 축제·행사)** 관련 법령(재난안전법, 공연법 등)에 따라 행사 특성(개최장소, 시간 등)을 고려한 4단계 안전관리체계 구축

- (현황조사) 지역축제, 공연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행사에 대한 사전조사
 - ※ 공연, 경기 등 관련 법에 의해 행사관리 시스템이 구축된 경우 행사현황 등록 관리
- (안전관리계획) 관련 법령에 따라 축제·행사 개요, 안전관리조직 운영, 안전요원 배치·교육, 적정 수용인원 산정, 사고발생 시 대응 등을 포함한 계획 수립

① (축제) 순간 최대 관람객 1,000명 이상 지역축제 등을 개최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66조의11) / 학교 축제 등 다수가 운집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 수립(고등교육법 제27조의2^{24.8월})

② (공연) 운영자 매년 공연장 재해대처계획을 수립·제출(공연장 이외 1,000명 이상 관람 공연 시 14일 이내) 하고, 지자체는 재해대처계획 내용 확인·보완 등을 거쳐 신고 수리(공연법 제11조)

③ (체육행사) 개최자는 1,000명 이상 체육행사 시 안전관리계획수립*(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의2)

*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안전요원 배치,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사고발생시 조치방안 등

- (사전점검) 승인된 안전관리계획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행사·축제 등의 현장 적용여부 및 이행 실태 지도·점검, 시정·보완을 통한 위험요인 제거
- (위험감시) 현장 안전관리요원 배치, 종합상황실 운영, CCTV* 관제를 통한 인파밀집 장소 실시간 모니터링

* CCTV 통합관제 재난상황실을 24시간 운영 중(124개 시군구, '24.3)

- (현장대응) 상황 발생 시 계획에 따라 현장에 배치된 안전요원(주최자), 지자체 공무원, 경찰력 등 통제인력 투입을 통한 신속 대응

② **(주기적 인파밀집)** 관련 법령(재난안전법, 통합교통체계법 등)에 따라 광범위 지역에 인파가 주기적 인파밀집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 (현황조사) 연말연시 연례행사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대상에 대한 사전조사
- (안전관리계획) 주최자 없는 연례적 인파밀집은 연례행사와 지하철·공항, 복합쇼핑몰 등 관련 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

- ① (주최자 없는 축제) 순간 최대 관람객 1,000명 이상 지역축제 등을 개최할 경우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 (§66조의11, '24.3.27 시행)
- ② (교통) 추석·명절 등 특별기간 대책 등(인파 혼잡 완화 포함) 수립(통합교통체계법 제33조)
- ③ (다중이용시설) 연면적 5,000㎡이상 다중이용시설관리자는 위기상황매뉴얼 작성 (§34조의6)
 ※ ①문화·집회, ②종교, ③판매, ④운수, ⑤종합병원, ⑥숙박시설 → 10대 유형 작성(화재, 인파밀집 등) → 1회/년(지자체)

- (사전점검) 승인된 안전관리계획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행사·축제 등의 현장 적용여부 및 이행 실태 지도·점검, 시정·보완 등 요청하여 위험 요인 제거
- (위험감시) 종합상황실 운영, CCTV 관제를 통한 인파밀집 장소 실시간 모니터링
- (현장대응) 상황 발생 시 계획에 따라 지자체 공무원, 경찰력 등 통제인력 투입을 통한 신속 대응

③ **(예측곤란 인파밀집)**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해 인파밀집 징조 및 사고 상황 조기 발견을 위한 감시체계 구축

- (우려지역 선정) 평상시 유동 인구, 주말·연말 등 불특정 다수가 불규칙적으로 인파가 밀집되는 지역을 선정·관리(홍대입구, 성수동, 명동, 강남역 등)
- (위험감시) 종합상황실 운영, CCTV 관제를 통한 인파밀집 장소 실시간 모니터링
- (협조체계 구축) 인파밀집사고를 대비해서 대중교통 운영기관, 지역상인회, 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이 주기적 점검 및 협의체 사전 구축
- (현장대응) 위험징후 감지 및 상황 발생 시 지자체 공무원, 경찰력 등 통제인력 투입을 통한 신속 대응

□ 중앙행정기관

- 대상기관: 공연장·체육시설·대규모점포·전통시장 등 소관시설에서 다중운집인파사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중앙행정기관*

* 교육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 중기부 등 해당시설 등의 관리 등 관련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부처(재난안전법 시행령 별표 1의 3에서 정하는 재난관리주관기관)

- 주요 조치사항

- ① (인파 밀집 현황조사 및 안전관리)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시설 및 지역에 대한 다중운집 현황조사 실시, 관계기관 정보공유,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안전조치

< 다중운집인파사고 발생 우려 15개 유형(예시) >

- 사전 예고(5개 유형): ①지역축제, ②대학축제, ③공연, ④경기, ⑤행사(종교, 박람회 등) 등
- 주기적(7개 유형): ①연례적행사, ②지하철, ③버스터미널(정류장), ④공항, ⑤대규모점포, ⑥전통시장, ⑦해수욕장 등
- 예측곤란(3개유형): ①대도시 발달상권, ②지하철·공항운행정지, ③지하철에스컬레이터 고장 등

- ② (중점 관리지역 지정) 밀집도가 높아 인파 관리가 시급한 지역(시설)은 "다중인파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 방안 검토

* 재난안전법 제27조(특정관리대상지역 지정)과 연계 방안 검토(위험지역 지정 → 위험 해소계획 수립 → 국고보조 → 안전등급 및 점검 → 조치 결과 보고)

- ③ (안전점검) 소관 부처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지자체 등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등 이행 여부를 주기적 점검하여 미흡 시 개선요구 등 안전관리 조치

- ④ (특별대책기간 운영) 성탄절, 해넘이·해맞이 등 연말연시 인파가 집중되는 시기,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인파사고 특별대책기간(12.20~다음해 .1.1) 운영하여 현장점검 등 안전관리 철저

- ⑤ (행안부·관계부처)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운용, 관계기관 및 부서 상황공유, 상황판단회의 및 상황실 운영, 예방조치 총괄관리 등

- 재난 발생 우려 시 지역축제·공연 등 행사 중단·권고

□ 광역시·도

○ 대상기관 : 17개 광역 시·도

○ 주요 조치사항

① (인파밀집 현황조사 및 안전관리) 관내 다중인파 운집 유형별 (15개 유형 참고) 시설 및 지역 현황조사, 경찰 등 관계기관 정보 공유, 위험도가 높은 지역 및 시설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안전관리 조치

② (안전점검) 관할 지역 내 다중운집으로 인한 인파 관리가 필요한 지역 및 시설에 대하여 시군구, 재난관리책임기관, 시설 주체 등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등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흡 시 개선요구 등 안전관리 조치

- 대규모 인파밀집 축제, 행사, 위험도가 높은 시설 및 지역 등에 대하여는 경찰, 소방, 민간전문가 등과 협업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주기적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조치

③ (인파밀집 모니터링) 시·도 종합상황실에서 현장에 설치된 지자체 자체 시스템(피플카운팅* 등), 인파관리지원시스템(전국 100개소), CCTV 등을 활용 인파밀집정보 등 통합 모니터링 실시

* AI CCTV 설치·활용하여 실시간 인파밀집분석(단위면적당 수용인원 초과 여부 감지, 여유 2~3명/m²·주의 3~5명/m²·위험 6명/m²) 및 자동 안내방송 등 즉각적인 인파 분산 가능

< 인파밀집 감지 시 대응체계 >



④ (비상연락체계 구축) 경찰, 소방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운영

⑤ (재난 발생 우려 시) 지역축제·공연 등 행사 중단·권고

□ 시·군·구

○ 대상기관 : 전국 기초 지자체

○ 주요 조치사항

① (총괄) 다중운집 지역 및 시설에 대하여는 단체장(부단체장)이 총괄·지휘 하여 다중운집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위원회 심의, 안전점검, 통합관제, 현장합동상황실 설치·운영 등 안전관리* 실시

* 단체장(부단체장) 책임하에 소방, 경찰 등과 협조하여 인파사고 예방, 소관부서는 인파 운집 규모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단체장 등에게 보고하고, 관계기관 사전 협조요청 등 실시

※ 다중운집인파사고 예방을 위해 15개 유형별 안전관리 전담부서 지정 필요

〈안전관리계획 주요내용〉

- ▶ 축제·행사 등 개요(일반현황 등), 적정 수용인원, 안전요원 배치 및 교육, 사전점검, 민간 의료 인력 배치, 인파사고·화재 등 상황별 안전관리, 비상연락망 구축 및 기관별 임무·역할* 분담 등
- * ①인파 분산을 위해 지하철 무정차 통보 및 연장 운행요청, ②통신 장애 대비 이동통신 차량 배치 요청, ③고속도로 톨게이트 출입 제한 및 우회 요청 등

② (인파밀집 현황조사 및 안전관리) 관내 다중인파 운집 유형별 (15개 유형 참고) 시설 및 지역 현황조사, 경찰 등 관계기관 정보 공유, 위험도가 높은 지역 및 시설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안전관리 조치

< 다중운집인파사고 발생 우려 15개 유형(예시) >

- ▶ 사전 예고(5개 유형): ①지역축제, ②대학축제, ③공연, ④경기, ⑤행사(종교, 박람회 등) 등
- ▶ 주기적(7개 유형): ①연례적행사, ②지하철, ③버스터미널(정류장), ④공항, ⑤대규모점포, ⑥전통시장, ⑦해수욕장 등
- ▶ 예측곤란(3개유형): ①대도시 발달상권, ②지하철·공항 운행정지, ③지하철 에스컬레이터 고장 등

③ (계획수립·검토) 안전관리계획 수립, 심의*, 행사 합동지도·점검 계획(점검항목, 일정, 위험요인 검토 등) 수립,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구축 등

* (예: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수립→계획·제출(시·군·구 2개 이상일 경우 시도, 3주전)→사전검토(2주전)→지역안전관리위 심의**(10일전)→심의결과 통보(5일전)

** 지자체장(시도지사 포함)을 위원장으로 지역 군·경·소방관서의 장 등으로 구성

- ④ (사전점검) 유관기관(경찰, 소방 등)과 합동 지도·점검 주관, 비상 연락체계 작동여부 확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도 마련 및 운영 태세 구축, 인파밀집예상 지역 안전대책 강구
- ⑤ (행사 중) 안전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및 즉시 시정조치, 비상 연락체계 유지, CCTV모니터링 등을 통한 인파밀집 정보 수집·공유, 필요시 합동상황실 운영, 관내 보건소 주관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 ⑥ (행사 종료시) 행사 개최자는 계획에 따라 분산퇴장 유도, 인근 지하철역 출입 인파 관리*

* 지하철 교차 정차, 무정차 통과, 출구 및 입구 구분 운영 등

- ⑦ (인파사고 발생 등) 요시 인파사고 확대 방지를 위해 지역 축제·공연 등 행사 중단·권고(지자체·경찰·소방 등 논의), 지역축제 이동식 확성기·싸이렌 등으로 신속한 위험상황 전파 및 인파 통제실시, 안전요원 추가 배치 등 신속한 현장 대응 실시

※ 인파 밀집 위험 지역에 고정·순찰 등 탄력적 인력배치, 근무복장 및 안전장비(경광봉, 핸드마이크, 호루라기, 무전기, 재난안전통신망 등) 확보

□ 경찰

- ① (총괄) 112신고 접수 및 지자체 등 타 기관 요청 시 현장 긴급 출동, 인명구조 등 사회질서 유지 등
- ② (계획수립 등) 안전관리계획 수립, 사전점검 등은 도로·광장·공원에서 개최하는 행사와 재난발생이 우려되는 상황 시 참여
- ③ (인파사고 발생 등) 필요시 인파사고 확대 방지를 위해 지역 축제·공연 등 행사 중단 권고(지자체·경찰·소방 등 논의), 사고 발생 지점에서 근거리에서 위치한 경찰이 출동하여 상황보고, 지원요청, 통제선 설정 등의 피해 확산 방지조치 및 질서유지 실시
- ④ (사후조치)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한 주최자 등에 대한 신속수사, 필요시 수사본부 설치

□ 소방

- ① (총괄) 소방분야 안전점검, 인과사고 대비를 위해 긴급차량 대기 및 소방력 근접배치, 신속 대응을 위한 행사장 현장연락관 운영 등
- ② (계획수립·검토) 안전관리계획 심의 참여, 주최자·지자체와 협의하여 구조·구급요원 배치, 소방차 주차장소 지정 등 현장지휘체계 구축 방안 마련
- ③ (사전점검) 긴급상황 행동요령, 대피로 안내, 긴급차량 진입 동선 등 점검
- ④ (행사 중) 안전사고 대비 인근 소방관서, 관계기관과 비상연락 및 상황관리 체계 유지
- ⑤ (행사 종료시) 구조·구급인력, 구급차 등 배치 대기
- ⑥ (인과사고 발생 등) 필요시 인과사고 확대 방지를 위해 지역 축제·공연 등 행사 중단 권고(지자체·경찰·소방 등 논의), 응급환자 긴급 이송 실시, 필요시 현장지휘소 설치·운영

□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시설관리 주체

- 대상기관 : 한국철도공사, 서울·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김포골드라인운영(주), 대규모점포 관리자, 대학교의 장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관리주체
- 주요 조치사항
 - ① (인파 밀집 현황조사 및 안전관리) 소관 시설 등에서 주기적·정기적으로 다중운집 현상이 발생하는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 등 관계기관 정보공유,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안전조치

〈안전관리계획 주요내용〉

- ▶ ① 시설 일반현황(건축개요, 층별현황, 주변현황도 등), ② 시설물 적정 수용인원, ③ 다중 인파 중점관리대상, ④ 안전요원 배치 및 교육, ⑤ 사전점검, ⑥ 민간 의료인력 배치, ⑦ 인과사고·폭염·화재 등 상황별 안전관리, ⑧ 지자체·경찰·소방·유관기관 등 비상 연락망 구축 및 기관별 임무·역할 분담, ⑨ CCTV 설치 등 모니터링 등

- ② (중점 관리대상 지정) 밀집도가 높아 인파 관리가 시급한 시설 등은 "다중인파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관리 방안 검토
 - ※ 지자체·경찰 등 관계기관과 수시로 중점관리대상 안전관리 상황 공유
- ③ (사전점검) 인파 밀집 대비 관련 소관 시설(계단, 에스컬레이터 등) 등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계획 등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 점검 등 안전관리 조치
- ④ (인파밀집 모니터링 등) 인파혼잡 출·퇴근시간, 행사·휴가철·명절 등 인파가 집중되는 시기,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CCTV 모니터링 및 안전요원 추가 배치 등 안전관리 철저
- ⑤ (신속대응) 인파 분산을 위해 지하철·버스 무정차 통보 및 연장 운행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 대응*
 - * 대규모 지역축제·공연 등 행사 시 지자체 등과 실시간 정보공유체계 가동
- ⑥ (사고발생 시) 지자체,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에 신속하게 상황 공유(사고내용 및 피해현황 등), 신속한 인명 구조 및 안전조치 시행
 - 이용객 등이 동요하지 않도록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안전한 곳으로 피난·유도
 - 안전요원 재배치를 통해 이용객이 사고현장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안전관리 강화

V 다중운집인파사고 사전조치

□ 다중운집인파사고 사전 안전조치

○ 다중운집 위험지역 적극 발굴

- (중점관리지역 지정) 다중운집인파사고 우려지역(시설)은 "다중인파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 지속적 모니터링 및 관리

* 재난안전법 제27조(특정관리대상지역 지정)과 연계

- (국민참여 발굴) 안전신문고 앱의 '인파사고 위험신고'*를 활용하여 인파혼잡 발생 위험요인 신고 독려·홍보
 - * 안전신문고 앱에서 '인파사고 위험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집중신고제 운영(9월~)
- (인파사고예방단) 지자체-경찰-소방-지역자율방재단 등* '인파사고 예방단(단장:부단체장)' 등을 활용하여 인파밀집 우려지역 지속 발굴
 - * 읍면동장, 이통장,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하여 지역 내 위험요소 발굴 및 제거

○ 위험시기 집중 관리

- (특별대책기간 운영) 성탄절, 해넘이·해맞이 등 인파가 집중되는 특정시기* 대상 인파사고 특별대책기간(12.20~다음해 1.1.) 운영**
 - * 해남군 땅끝 해넘이축제(12.31.), 포항시 호미곶 해맞이축전(1.1), 간절곶 해맞이 축제(1.1) 등
 - ** 지자체,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 대책회의, 비상연락 체계 구축 등 실시

□ 다중운집인파사고 신속 대응체계 구축

○ (대응체계) 인파사고 위험 단계별 신속한 안전관리 실시

구분	1단계(여유)	2단계(주의)	3단계(위험)
적정인원	2명/1㎡ 이하	3~4명/1㎡	5명/1㎡ 이상
관측상황	모니터링	군중흐름 정체	사고 위험 증가 및 밀도 압박
안전관리 조치사항	①상시 인파사고 우려지역 관제센터 모니터링 ②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구축	①관계기관(경찰서 등) 및 관련부서 상황공유 ②안내방송 실시 및 전광판 위험 경고 문구 표기 ③안전관리요원 투입 및 현장 계도 ④단계적 경찰 투입 및 소방력 근접 배치 등 ⑤일방통행 등 동선관리	①행사·축제장 등 해당시설 진입통제 ②인파분산 및 대피 유도, 도로 통제 실시 ③인파밀집 위험 재난문자 발송 ④지하철 무정차 통과 등 유관기관 대응 요청 ⑤재난 발생 우려시 지역 축제·공연 등 행사 중단

※ 적정인원은 공연법 및 철도안전법 등 관련 규정(가이드라인 등)이 있는 경우 우선 적용

참고 1

다중운집인파사고 15개 세부 유형

분류	유형	중점관리대상	비고
사전 예고	①지역축제 (서울·부산 불꽃축제 등)	▶ 순간최대* 참여인원 5,000명 이상 * 축제장 내 1시간 동안 관람객 수 ※ '24년 1,604개 축제 중 1만명 이상 축제 132개	재난안전법/ 행안부 (지자체)
	②대학축제 (연대·고대 등)	▶ 순간최대 참여인원 5,000명 이상	고등교육법/ 교육부 (시도교육청, 지자체)
	③공연 (임영웅, 성수동 등)	▶ 등록 공연장: 관람객 3,000명 이상 ▶ 공연장 외 공연: 관람객 5,000명 이상	공연법/ 문체부 (지자체)
	④경기 (축구, 야구 등)	▶ 관람객 1만명 이상 입장 가능한 경기(경기장) ※ 인파 해산 시 지하철역 인접에 따른 혼잡 발생 지역	국민체육진흥법/ 문체부 (지자체, 시설관리주체)
	⑤행사 (종교, 박람회 등)	▶ 종교, 박람회, 전시회 등 1만명 입장 행사	전시산업발전법 등/ 문체부 등 (지자체, 시설관리주체)
주기적	⑥연례적 행사 (크리스마스, 연말연시등)	▶ 주최자가 없는 행사, 순간최대 참여인원 5,000명 이상 연례적 행사(장소 포함) ※ 벚꽃개회기(명소), 헬러원크리스마스, 해넘이·해맞이(명소) 등	재난안전법/ 지자체
	⑦지하철	▶ 이용객 1일 5만명 이상 역 ▶ 과거 혼잡으로 안전사고 발생한 지하철역 ▶ 객차내 혼잡도 150%이상 노선	철도안전법/ 국토부 (지자체, 지하철 공사 등)
	⑧버스 정류장(터미널)	▶ 이용객 1일 1만명 이상 버스터미널 ▶ 과거 혼잡으로 안전사고 발생한 버스정류장(터미널)	교통안전법 등/ 국토부 (지자체)
	⑨공항	▶ 이용객 1일 1만명 이상 공항 ▶ 과거 혼잡으로 안전사고 발생한 공항	항공안전법/ 국토부 (공항공사)
	⑩대규모점포 (스타필드, 현대백화점 등)	▶ 이용객 1일 1만명 이상 복합쇼핑몰, 백화점 등	유통산업발전법/ 산업부 (지자체)
	⑪전통 시장	▶ 이용객 1일 5,000명 이상 전통시장	전통시장법/ 중기부 (지자체)
	⑫해수욕장	▶ 이용객 1일 5,000명 이상 해수욕장	해수욕장법/ 해수부 (지자체)
예측 곤란	⑬대도시 발달 상권(홍대, 명동, 성수카페거리 등)	▶ 1만명 이상/일 유동 인구가 있는 상권 ※ 홍대거리, 명동, 성수카페거리, 대구 동성로 등 ▶ 과거 인파사고 위험 신고된 지역	재난안전법/ 지자체
	⑭운행 정지 (엘차, 항공기 등)	▶ 과거 운행 정지로 인파사고 발생 우려 장소 ▶ 과거 운행 정지로 인파사고 발생 우려 설비	관리주체 (철도·공항공사)
	⑮에스컬레이터 고장(지하철)	▶ 에스컬레이터 고장에 따른 안전조치(인력배치 등) ▶ 과거 인파사고 발생에 따라 관심대상	승강기법/ 승강기안전공단 (철도공사 등)

참고 2

다중운집인파사고 유형별 안전관리 체계

분류	유형	관련법	등록		안전관리계획			사전점검		대응체계구축
			여부	시스템	수립	심의		여부	전문가	
						여부	전문가			
사전 예고	①지역축제 (서울·부산 불꽃축제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x	x	○	○	○	○	○	○
	②대학축제 (연대·고대 등)	고등 교육법	○	x	○	x	x	○	x	○
	③공연 (임영웅 성수동 등)	공연법	○	○	○	x	x	○	○	○
	④경기 (축구, 야구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 용에 관한 법률	○	○	○	○	○	○	○	○
	⑤행사 (종교, 박람회 등)	-	x	x	x	x	x	x	x	x
주기적	⑥연례적 행사 (크리스마스, 연말연시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x	x	○	○	○	○	○	○
	⑦지하철 (철도)	철도 안 전 관 리 체 계 기 술 기 준	x	x	○	x	x	○	○	○
	⑧버스 정류장(터미널)	x	x	x	x	x	x	x	x	x
	⑨공항	x	x	x	x	x	x	x	x	x
	⑩대규모점포 (스타필드, 현대백화점 등)	유통산업 발전법	○	○	x	x	x	x	x	x
	⑪전통 시장	전통 시장법	x	x	x	x	x	x	x	○
	⑫해수욕장	해수 욕장법	x	x	○	○	○	○	○	○
예측 곤란	⑬대도시 발달 상권(홍대, 명동, 성수 카페거리 등)	x	x	x	x	x	x	x	x	x
	⑭운행 정지 (열차, 항공기 등)	철도 안전법	x	x	○	△	x	○	○	○
	⑮에스 컬레이터 고장(지하철)	승강기 안전관리 법	x	x	x	x	x	○	○	○

참고 3

인파밀집 지역 안내문 예시(픽토그램, 안내문 등)



[인파밀집 지역 안전사고 예방 안내 픽토그램]



[인파밀집 지역 안전사고 예방 안내문]



[인파사고 신고협조 안내 표지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지역위원회) ①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도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해당 지역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①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
- ②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라 위험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그 구역의 범위와 제1항제1호에 따라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행위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에게 위험구역의 설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42조(강제대피조치) ①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 또는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나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그 지역 또는 위험구역 안의 주민이나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거나 선박·자동차 등을 견인시킬 수 있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을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3조(통행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은 응급조치에 필요한 물자를 긴급히 수송하거나 진화·구조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관서의 장에게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해당 긴급수송 등을 하는 차량 외의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4조(응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시·군·구나 관할 구역에 있는 군부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 그 밖의 민간기관·단체의 장에게 재난관리자원의 지원 등 필요한 응원(應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응원을 요청받은 군부대의 장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023. 1. 17.>

② 제1항에 따라 응원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응원을 요청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지휘에 따라 응급조치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종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로서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참여 예상 인원의 규모와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6.>

② ~ ④ 생략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은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그 밖에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 또는 해당 기관의 소관 사항에 대한 역할 분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그 밖에 관계 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안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경찰의 사무) ① 경찰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자치경찰사무** :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

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위험 발생의 방지 등) ①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는 것
2.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3.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하는 것

제7조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④ 경찰관은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6조에 따른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

제8조(사실의 확인 등) ① 경찰관서의 장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사 단체 등에 직무 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의2(정보의 수집 등) ① 경찰관은 범죄·재난·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와 이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을 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① 시·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을 정하여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경찰청장은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도로의 관리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행렬등의 통행) ③ 경찰공무원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렬등에 대하여 구간을 정하고 그 구간에서 행렬등이 도로 또는 차도의 우측(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차도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제외한 부분의 우측을 말한다)으로 붙어서 통행할 것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공연법>

제11조(재해예방조치)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된 재해대처계획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수립, 신고 또는 보완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의2(재해예방조치) ① 1천명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해당 체육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체육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3.>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 안전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 1의2. 입학식·졸업식, **학교 축제** 등 학생 및 교직원 다수가 운집하는 행사로서 학교가 주최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이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개최하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기본방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의2(대규모 행사에서의 응급의료 인력 등 확보 의무) 행사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응급환자의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44조의2(대규모 행사에서의 응급의료 인력 등 확보 의무)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응급의료인력과 응급이송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1. 응급의료인력: 응급구조사, 의사 또는 간호사 1명
2. 응급이송수단: 구급차 등 1대